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인요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3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9.

발 의 자 : 인요한 · 권영진 · 김은혜
조승환 · 곽규택 · 임종득
김 건 · 고동진 · 구자근
성일종 · 김도읍 · 김미애
정점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가지는 한편, 현행법령에서는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(NLL: Northern Limit Line)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정부가 북송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이 발생하여,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강제이송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한편,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경우 권력적 행정조사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하는 강제이송을 금지하는 한편, 보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등).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강제이송의 금지) 군사분계선 이남지역(이하 “남한”이라 한다)에 도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한에 이송되지 아니한다.

제7조의2(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) ① 보호신청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통일부장관은 보호신청자의 신청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법률구조법」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9조제1항 중 “군사분계선 이남지역(이하 “남한”이라 한다)”을 “남한”으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제3조의2(강제이송의 금지) 군사분계선 이남지역(이하 “남한”이라 한다)에 도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한에 이송되지 아니한다.
<u><신설></u>	제7조의2(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) ① 보호신청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신청자의 신청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법률구조법」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제19조(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)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<u>군사분계선 이남지역</u> (이하 “남한”이라 한다)에 가족	제19조(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) ① ----- -----<u>남한</u>----- -----

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 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② ~ ④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	---